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제775호 2024. 6. 11.(화)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61호 군관리계획(남산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4-62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6
남해군 고시 제2024-6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상천)	9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848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남해군 공고 제2024-852호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2
남해군 공고 제2024-863호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4
남해군 공고 제2024-884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남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공사」	31
남해군 공고 제2024-886호 2024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공고(남면)	33
남해군 공고 제2024-894호 공무원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공고	38
남해군 공고 제2024-897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국도77호선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9
남해군 공고 제2024-915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4-919호 양식업권 면허처분 및 양식업권 소멸사항 공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4-922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59

남해군 공고 제2024-925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60

남해군 공고 제2024-926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61

남해군 공고 제2024-927호 「남해군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공모전 실시 공고(수정) ..... 62

남해군 공고 제2024-928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65

남해군 공고 제2024-930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66

남해군 공고 제2024-932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지족천) ..... 67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61호

남해군관리계획(남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남산공원: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5. 27.

남 해 군 수

-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남산 공원	근린 공원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162,168	-	162,168	건고 제406호 (1973.10.12)	

####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71,190	감)9,022	162,168	100.00	651	-	651	911	-	911	
시설지면적	34,845	감)183	34,662	21.37	651	-	651	911	-	911	
도로	8,220	감)58	8,162	5.03	-	-	-	-	-	-	
조경시설	2,830	-	2,830	1.74	-	-	-	-	-	-	
휴양시설	6,064	감)76	5,988	3.69	-	-	-	-	-	-	
유희시설	3,840	-	3,840	2.37	-	-	-	-	-	-	
운동시설	6,331	감)328	6,003	3.70	-	-	-	-	-	-	
편익시설	2,837	증)279	3,116	1.92	344	-	344	344	-	344	
교양시설	4,666	-	4,666	2.88	260	-	260	520	-	520	
공원관리시설	57	-	57	0.04	47	-	47	47	-	47	
녹 지	136,345	감)8,839	127,506	78.63	-	-	-	-	-	-	

##### ■ 시설결정규모

공원면적 (㎡)	시 설 율		건 폐 율		비 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면적(㎡)	비 율(%)	
기정	171,190	34,845	20.4	651	0.4
변경	162,168	34,662	21.4	651	0.4

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 시설을 4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번호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1,190	감)9,022	162,168	651	651	911	911	100.00	시설율 21.4%
시설지면적					34,845	감)183	34,662	651	651	911	911	21.37	
도로					8,220	감)58	8,162	-	-	-	-	5.03	
조경시설					2,830	-	2,830	-	-	-	-	1.74	
	잔디밭-1	1-1	1-1	서변리 산15-1	2,620	-	2,620	-	-	-	-	1.61	
	초화원	1-2	1-2	서변리 산1-1	210	-	210	-	-	-	-	0.13	
휴양시설					6,064	감)76	5,988	-	-	-	-	3.69	
	피크닉장	2-1	2-1	평리 1266-2	3,920	-	3,920	-	-	-	-	2.42	
	광장-1	2-2	2-2	서변리 236	40	-	40	-	-	-	-	0.02	
	광장-4	2-3	2-3	서변리 275-1	130	-	130	-	-	-	-	0.08	
	광장-5	2-4	2-4	평리 산15-1	256	-	256	-	-	-	-	0.16	
	광장-6	2-5	2-5	평리 1266-1	470	감)76	394	-	-	-	-	0.24	
	광장-7	2-6	2-6	평리 산15-1	70	-	70	-	-	-	-	0.04	
	광장-8	2-7	2-7	평리 산13	160	-	160	-	-	-	-	0.10	
	광장-9	2-8	2-8	서변리 산1-1	490	-	490	-	-	-	-	0.30	
	광장-10	2-9	2-9	서변리 산1-1	20	-	20	-	-	-	-	0.01	
	광장-11	2-10	2-10	서변리 199-11	110	-	110	-	-	-	-	0.07	
	휴게지-1	2-11	2-11	평리 산15-1	170	-	170	-	-	-	-	0.11	
	휴게지-2	2-12	2-12	평리 산15-1	60	-	60	-	-	-	-	0.04	
	휴게지-3	2-13	2-13	서변리 산1-1	10	-	10	-	-	-	-	0.01	
	휴게지-4	2-14	2-14	서변리 산1-1	120	-	120	-	-	-	-	0.07	
	휴게지-5	2-15	2-15	서변리 247	38	-	38	-	-	-	-	0.02	
유희시설					3,840	-	3,840	-	-	-	-	2.37	
	어린이놀이터-1	3-1	3-1	서변리 234	2,440	-	2,440	-	-	-	-	1.51	
	어린이놀이시설	3-2	3-2	아산리 239	1,400	-	1,400	-	-	-	-	0.86	

# 남 해 군 공 보

(4) 제 775 호

2024년 6월 11일

구분	시설명	시설번호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6,331	감)328	6,003	-	-	-	-	3.70	
	지압보도	4-1	4-1	서변리 산1-1	560	-	560	-	-	-	-	0.34	
	인라인스케이트	4-2		서변리 245	309	감)309	-	-	-	-	-	0.00	
	체력단련시설	4-3	4-2	서변리 산1-1	270	감)19	251	-	-	-	-	0.16	
	그라운드골프장	4-4	4-3	서변리 242	3,402	-	3,402	-	-	-	-	2.10	
	농구장	4-5	4-4	서변리 253	608	-	608	-	-	-	-	0.37	
	풋살경기장	4-6	4-5	서변리 248	1,182	-	1,182	-	-	-	-	0.73	
편의시설					2,837	증)279	3,116	344	344	344	344	1.92	
	전망대	5-1	5-1	서변리 산1-1	30	-	30	-	-	-	-	0.02	
	주차장-1	5-2	5-2	서변리 200-4 서변리 산5-1	1,850	-	1,850	-	-	-	-	1.14	
	주차장-2	5-3	5-3	서변리 252	504	-	504	-	-	-	-	0.31	
	세족장	5-4	5-4	서변리 산1-1 평리 산13	3	-	3	-	-	-	-	-	
	음수대-2	5-5	5-5	서변리 247	6	-	6	-	-	-	-	0.01	
	화장실-1	5-6	5-6	서변리 247	38	-	38	38	38	38	38	0.02	
	화장실-2	5-7	5-7	평리 1267-1	67	-	67	67	67	67	67	0.04	
	화장실-3	5-8	5-8	평리 산15-1	90	-	90	90	90	90	90	0.06	
	화장실-4	5-9	5-9	서변리 산1-1	20	-	20	20	20	20	20	0.01	
	취사장	5-10	5-10	평리 1267-2	77	-	77	77	77	77	77	0.05	
	테크계단	5-11	5-11	서변리 산1-1	100	-	100	-	-	-	-	0.06	
	관리실-1	5-12	5-12	서변리 247	32	-	32	32	32	32	32	0.02	
	관리실-2	5-13	5-13	서변리 산1-1	20	-	20	20	20	20	20	0.01	
	관리실-3	-	5-14	서변리 245	-	증)279	279	-	-	-	-	0.17	신설
교양시설					4,666	-	4,666	260	260	520	520	2.88	
	충혼탑	6-1	6-1	평리 산1	990	-	990	-	-	-	-	0.61	
	3.1기념비	6-2	6-2	서변리 산1-1	170	-	170	-	-	-	-	0.10	
	예지원	6-3	6-3	서변리 산1-1	3,350	-	3,350	260	260	520	520	2.07	
	야외공연장	6-4	6-4	서변리 249-1	156	-	156	-	-	-	-	0.10	
공원관리시설					57	-	57	47	47	47	47	0.04	
	배수지	7-1	7-1	서변리 산4	32	-	32	32	32	32	32	0.02	
	가압장	7-2	7-2	서변리 산1-1	15	-	15	15	15	15	15	0.01	
	오수처리장	7-3	7-3	서변리 산1-1	10	-	10	-	-	-	-	0.01	
녹 지					136,345	감)8,839	127,506	-	-	-	-	78.6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기 정			2,437				
		변 경			2,456				
기정	소로	2	1	8	228	진입로-1	서측구역계	회차공간	
기정	소로	3	2	4	176	진입로-3	진입광장	초화원	
기정	소로	3	3	3	243	진입로-5	남측구역계	소로3-9	
기정	소로	3	4	3	294	순환로-1	공설운동장 경계부	소로2-1	
기정	소로	3	5	3	209	순환로-2	소로3-6	소로3-2	
기정	소로	3	6	2	150	산책로-4	소로3-5	휴게지1	
기정	소로	3	7	2	122	산책로-2	휴게지1	전망대	
변경	소로	3	7	2	127	산책로-2	휴게지1	전망대	
기정	소로	3	8	2	97	산책로-1	전망대	소로2-1	
기정	소로	3	9	3	432	진입로-2	회차공간	충혼탑	
기정	소로	3	10	3	48	진입로-4	충혼탑	소로3-2	
기정	소로	3	11	2	55	산책로-3	소로3-9	소로3-3	
기정	소로	3	12	2	86	산책로-5	소로3-9	소로3-3	
변경	소로	3	12	2	100	산책로-5	소로3-9	소로3-3	
기정	소로	3	13	2	100	산책로-7	어린이놀이터	소로3-4	
기정	소로	3	14	2	15	산책로-6	어린이놀이터	소로3-4	
기정	소로	3	15	2	75	산책로-8	소로3-6	지압보도	
기정	소로	3	16	2	107	산책로-9	소로 2-1	전망대	

남해군 고시 제2024 - 62호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남 해 군 수

###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31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1	19630	도근점	중부	250072.517 290613.453	81.774	127° 59' 26.51059"	34° 50' 33.09572"	20240201	창선면 옥천리 161-3	표철	남해군청		
2	19631	도근점	중부	250016.990 290660.676	74.213	127° 59' 28.3474"	34° 50' 31.27896"	20240201	창선면 옥천리 1125-11	표철	남해군청		
3	19632	도근점	중부	249946.139 290653.072	89.822	127° 59' 28.02062"	34° 50' 28.98257"	20240201	창선면 옥천리 산183-1	표철	남해군청		
4	19633	도근점	중부	257834.989 291834.04	31.444	128° 00' 17.60996"	34° 54' 44.55878"	20240218	창선면 대벽리 737-6	표철	남해군청		
5	19634	도근점	중부	257879.117 291906.283	30.624	128° 00' 20.47289"	34° 54' 45.96698"	20240218	창선면 대벽리 1091	표철	남해군청		
6	19635	도근점	중부	257916.599 291951.357	30.473	128° 00' 22.26309"	34° 54' 47.16843"	20240218	창선면 대벽리 807-1	표철	남해군청		
7	17505	도근점	중부	256351.733 280361.469	43.22	128° 00' 17.60996"	34° 53' 59.93582"	20240222	고현면 대사리 270	표철	남해군청		
8	17506	도근점	중부	256300.589 280340.633	38.779	127° 52' 44.37124"	34° 53' 58.28229"	20240222	고현면 대사리 471-1	표철	남해군청		
9	17507	도근점	중부	256248.422 280343.678	32.898	127° 52' 44.47315"	34° 53' 56.58879"	20240222	고현면 대사리 485-2	표철	남해군청		
10	12225	도근점	중부	237727.466 292370.708	40.476	128° 00' 30.78651"	34° 43' 51.98073"	20240311	상주면 상주리 산13	표철	남해군청		
11	12226	도근점	중부	250016.990 292281.959	46.908	128° 00' 27.31257"	34° 43' 53.16535"	20240311	상주면 상주리 산11-2	표철	남해군청		
12	12227	도근점	중부	237907.327 292240.879	46.342	128° 00' 25.75485"	34° 43' 57.85874"	20240311	상주면 상주리 466-2	PVC	남해군청		
13	16585	도근점	중부	253306.811 292370.708	1.205	128° 00' 30.78651"	34° 43' 51.98073"	20240313	서면 노구리 384-2	표철	남해군청		
14	16586	도근점	중부	253144.05 275277.931	2.98	127° 49' 23.96404"	34° 52' 17.25842"	20240313	서면 노구리 362-3	표철	남해군청		
15	19642	도근점	중부	256534.148 290748.137	18.078	127° 59' 34.33067"	34° 54' 2.70405"	20240319	창선면 울도리 471-2	표철	남해군청		
16	19643	도근점	중부	256407.048 290793.857	20.413	127° 59' 36.08156"	34° 53' 58.56555"	20240319	창선면 울도리 503-12	표철	남해군청		

지역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17	13642	도근점	중부	246181.140	295797.827	41.113	128° 02' 48.9380"	34° 48' 25.1294"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623-2	표철	남해군청		
18	13643	도근점	중부	246103.273	295771.389	36.981	128° 02' 47.8661"	34° 48' 22.6119"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746-1	표철	남해군청		
19	13644	도근점	중부	246015.075	295765.455	36.069	128° 02' 47.5965"	34° 48' 19.7523"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739-3	표철	남해군청		
20	13645	도근점	중부	245895.306	295789.002	82.467	128° 02' 48.4736"	34° 48' 15.8584"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산365-5	표철	남해군청		
21	13646	도근점	중부	245890.283	295843.534	86.097	128° 02' 50.6166"	34° 48' 15.6769"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산365-5	표철	남해군청		
22	13647	도근점	중부	245892.821	295920.883	87.698	128° 02' 53.6602"	34° 48' 15.7331"	20240417	삼동면 동천리 산366-1	표철	남해군청		
23	11560	도근점	중부	245876.0337	287346.2799	3.4184	127° 57' 16.3606"	34° 48' 17.9641"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6	표철	남해군청		
24	11561	도근점	중부	245881.4662	287487.8854	3.346	127° 57' 21.9330"	34° 48' 18.0966"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25	11562	도근점	중부	245907.0737	287648.5034	3.2174	127° 57' 28.2608"	34° 48' 18.877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26	11563	도근점	중부	245933.7601	287800.8066	3.2245	127° 57' 34.2620"	34° 48' 19.6965"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6	표철	남해군청		
27	11564	도근점	중부	245767.9283	287813.8679	2.2858	127° 57' 34.7135"	34° 48' 14.311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1	표철	남해군청		
28	11565	도근점	중부	245721.892	287634.1559	4.5195	127° 57' 27.6270"	34° 48' 12.873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133	표철	남해군청		
29	11566	도근점	중부	245644.9409	287549.5395	4.0706	127° 57' 24.2696"	34° 48' 10.4032"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30	11567	도근점	중부	245740.1191	287444.4449	3.9157	127° 57' 20.1713"	34° 48' 13.5239"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136	표철	남해군청		
31	11568	도근점	중부	245796.5026	287441.1956	4.3738	127° 57' 20.0646"	34° 48' 15.3543"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6	표철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4 - 6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남 해 군 수

- 하 천 명 : 서상천(지방하천)
- 성 명 : 남해군수(서면장)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76
- 점용목적 : 수변공원조성
- 점용위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722-24번지, 722-26번지
- 점용면적 : 영구점용 616㎡
- 점용기간 : 2024. 6. 4. ~ 영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848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21.)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비상벨등)의 설치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조문 인용 및 조례 위임사항 신설
- 법령 용어 단순·명확화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80,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전화 055-860-328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 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 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를 “ “조례로” 로, “이란” 을 “이라 함은” 으로 한다.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 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 2.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규모, 구조, 형태 및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 2. 남해군청 및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 3.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하여야 한다” 를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를 “조치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제1항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을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리대장을” 을 “관리카드를”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운영) 군수는 법 제9조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 를 각각 “설치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 를 “지정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 를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 를 “소독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를 “비치·제공할 것” 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자를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년도			관리책임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성별	남/여	월평균 이용인원			(남: /여 )	
규모	부지 (m <sup>2</sup> )	화장실 면적 (m <sup>2</sup>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지정 및 설치내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규정함----- -----.</p>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 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③ ----- “조례로 -----이 -----라 함은 -----.</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p> <p>2.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p>

<신 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및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남해군청 및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  
-----  
-----.

1. -----  
-----  
----- 할 것
2. -----  
----- 조치할 것
3. -----  
-----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한다.

<삭 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  
-----  
----- 관리카드를 -----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등을 고려하

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  
-----  
-.

1. -----  
-----  
----- 설치할 것.
2. -----  
-----  
----- 설치할 것
3. -----  
-----  
----- 설치할 것
4. -----  
-----  
----- 설치할 것

② -----  
-----.

1. -----  
----- 지정할 것
2. -----  
----- 할 것
3. -----  
----- 소  
----- 독할 것
4. ----- 비치·제  
----- 공할 것

③ (생 략)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점검자에게 불법촬영 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 금액
- 2. 법 제8조에 따른 화장실 관리기준

<신 설>

<신 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준수사항) -----  
-----  
-----.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 3. 관리자를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852호

##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9.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4. 6. ~ 2024. 8.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29-1번지(신보탄마을) 일원	전석쌓기 870㎡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4. 5. 29. ~ 2024. 6. 12.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5. 29. ~ 2024. 6. 1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군	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대장면적	편입면적		
1	남해	상주	상주	산246-2	임	397	397	한승*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2	남해	상주	상주	산247-2	임	3,967	465	조광*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	남해	상주	상주	산247-2	임	3,967	465	강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2	남해	상주	상주	산247-2	임	3,967	465	강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	남해	상주	상주	851-1	답	1,369	11	박철*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	남해	상주	상주	산248-2	임	595	52	이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4	남해	상주	상주	산248-2	임	595	52	이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 계						6,328	925		
합 계						6,328	925		

남해군 공고 제2024 - 863호

##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주요 직무 내용
평생교육사 (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li> <li>평생교육사업 공모 신청·운영</li> <li>평생학습관 관리 등</li> </ul>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 · 주소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기준일 해당 자격증 소지한 자 및 경력 보유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2.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가. 공공기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b>평생교육사</b>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ul>

▶ **관련분야 실무경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평생교육분야 근무 경력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 평생교육분야 업무 경력  
 \* 전임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 명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5항)

## 4. 채용조건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 보수수준

구분	채용등급	연봉액 (천원)	근무시간	비고
평생 교육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6,357	월~금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li> <li>(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li> <li>(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li> <li>• 4대 보험 가입</li> <li>• 복지포인트 지급</li> </ul>

※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41,551천원×35시간/40시간)

## 5. 시험방법

###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4.6.3.(월) 9:00 ~ 6.5.(수) 18:00	서류전형	-	2024. 6. 7.(예정)
	면접시험	2024. 6. 11.(예정)	2024. 6. 14.(예정)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국.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4. 6. 5.)까지 인정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동봉 \*정부수입인지 불가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라급) 5,000원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055-860-3113)으로 사전연락 바람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남해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구 분	내 용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접수 시 원본 지참)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분만 유효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행정팀 (☎ 055-860-3113)
  - 직무관련 문의 : 행정과 교육협력팀 (☎ 055-860-3863)



남해군 공고 제2024 - 884호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남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04월 23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 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남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3. 사업장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108-2번지 일원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정비 L=392m
5.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3. 까지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2024. 5. 30.

남 해 군 수

**붙임**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및 사업현황**

□ 남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공시송달 대상(토지) - 소유자, 관계인

연 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 군 남면)	지번	토지 지목 / 물건 종류		면적(m <sup>2</sup> ) / 수량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 황	공부	편 입					
1	상가리	산91-1	임 야	임 야	11	11	미등기 1		김0기		임야대장 상 소유자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남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공고 제2024 - 886호

## 2024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남해군 2024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 계도 및 감시 등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6. 3.

남해군수

###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2명
- 모집기간 : 2024. 6. 3.(월) ~ 6. 7.(금) 18:00시까지
- 근무장소 및 기간

구분	근무장소	모집인원	근무기간
소규모 물놀이 지역	남면 구미숲 및 선구	2	2024. 7. 1.~ 8. 31.

- 근무내용
  -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및 상황전파
  -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수시순찰
  - 물놀이 안전시설물 관리 및 점검
  - 물놀이 지역 주변 환경 정화 활동
  -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에서 70세이하인 자
  -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만75세 이하인 자 포함
- 여름철 야외근무(8시간)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자
-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인(평일,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가능 자
-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우대요건 ※ 가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각각에 적용됨

- 관련분야 자격증 및 유경험자

대상	가점	비고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 구조·구급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제출	5점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물놀이 안전관리 유경험자	5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대상	가점	비고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관련 증명서 제출	5점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 제출	5점	

○ 독립·국가·민주·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가점	
	10점	5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 - 4.19 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 중 1인 -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대 중 1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대 중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대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3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공통사항	- <b>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b> - 특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가점부여를 하지 아니함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및 유경험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 일반지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함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기자(예비자)로 관리되며, 결원 발생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기자(예비자)의 순위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근무방법 : 물놀이 지역 고정근무
- 근무기간 : 2024. 7. 1. ~ 8. 31(2개월)
- 1일 8시간(근무시간 11:00 ~ 20:00)
- 주 5일 40시간 (근무 특성상 **토, 일,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임금 : 일78,880원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반영
-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실시
  - ※ 근무시간(기간)은 기상, 일몰시간 등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본인(대리인 가능)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 ※ 2024. 6. 7.(금)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이메일 : ahstr11@korea.kr
  - 우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서대로 778 남면사무소 총무팀
- 접수처 : 남면 행정복지센터
  - ※ 평일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 2)
-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및 다자녀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2. (수)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심사 : 2024. 6. 14.(금) 남면사무소 **일정 변동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17(월) 개별 유선통보

(일정에따라 변경)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함
- **사업장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선발 취소가 가능하며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순위 대기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면 행정복지센터(☎860-8257)로 문의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894호

##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공고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1.

남 해 군 수

### 1. 합격자 명단

채용예정분야	응시번호	성명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2	류○○
	4	정○○
	5	강○○
	8	이○○
	9	이○○

### 2. 면접시험 실시 안내

채용예정분야	면접시험 일시	출석시간	면접대상자	면접장소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2024.6.4.(화) 14:00	13:30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화전도서관 3층 2-1강의실

- 응시자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응시표 등)
-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장소 대기실(화전도서관 3층 소회의실)로 도착하시어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055-86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89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5. 9.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6. 3.

### 남 해 군 수

1. 사 업 명 : 국도77호선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의 위치 : 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 1091-14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5. 9.)
5. 공고기간 : 2024. 06. 03. ~ 2024. 06. 19.(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의 대상자 참고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15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공시송달 대상자

(토지소재지 : 경남 남해군)

- 사업명 :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재결일 : 2024. 5. 9. (24수용0014)

일련 번호	성 명	송 달 주 소(최종 확인지)	사 유	비 고
1	유0수-(재송달1)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260번길 10-4 (아미동2가)	사망	
2	정0규-(재송달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70 (명륜동, 명륜아이파크1단지) 113동 2001호	수취인시망	

남해군 공고 제2024 - 915호

##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 '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9조)

－ ' 재외국민 ' · ' 거소 ' 및 ' 국내거소신고번호 ' 표현 삭제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3·4조)

－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 없음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10조)

라.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12조의2·12조의3)

바.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별지 1~7호)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6,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체류지”를 “주소”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를 “성명·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주민투표청

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 중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을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해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해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남해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군의 책무) ① <u>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외국인</u>-----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u>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u>투표인명부</u> ----- ----- <u>주소</u>----- ----- <u>외국인</u>-----.</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u>2.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u></li> <li><u>3.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u></li> <li><u>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li> <li><u>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u></li> </ol>	<p>&lt;삭 제&gt;</p>

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 성명·주소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남해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  
-----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

남해군 공고 제2024-919호

##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642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소벽	40,000	2024.06.13 2034.06.12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가길 34	최0균 외1 (정0권)	330호 재개발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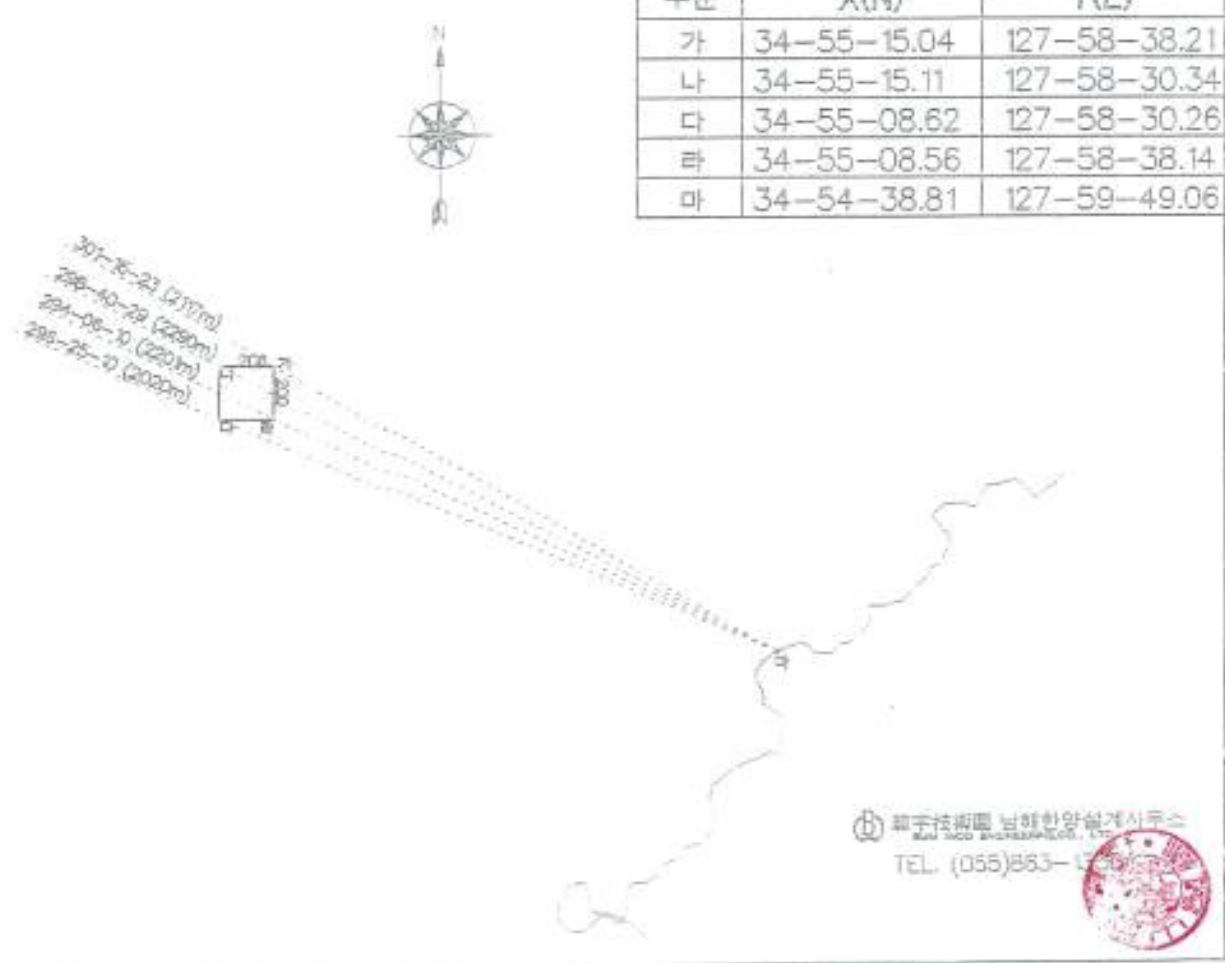
##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330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소벽	40,000	2014.06.13 2024.06.12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가길 34	최0균 외1 (정0권)	

### 남해양식 어업면허 제 64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파류양식 축척 :  $\frac{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식 : 울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 시(군) 향선 읍,면,동 소백 리 치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 시(군) 향선 읍,면,동 소백 리  
 - 보조기점  
 (가): 301° 16' 2117 미터의 점 (나): 298° 40' 2990미터의 점  
 (다): 294° 06' 2201 미터의 점 (라): 296° 25' 2020미터의 점  
 \* 가, 나, 다, 라 각점의 좌표 아래표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 나, 다, 라 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sup>2</sup>

WGS		
구분	X(N)	Y(E)
가	34-55-15.04	127-58-38.21
나	34-55-15.11	127-58-30.34
다	34-55-08.62	127-58-30.26
라	34-55-08.56	127-58-38.14
마	34-54-38.81	127-59-49.06



남해군농업기술센터  
 TEL. (055)853-1111

남해군 공고 제2024 - 92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이형0	주소	순천시 도장길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204번지 (649번지 인근)		
	면적	2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925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김영0	주소	순천시 삼산로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49번지		
	면적	2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926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김민0	주소	영광군 흥농읍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49번지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927호

## 「남해군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공모전 실시 공고

남해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을 국민들로부터 공모·발굴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 남 해 군 수

#### 1. 공모개요

- 접수기간: 2024. 6. 7.(금) ~ 6. 27.(목)
- 대 상: 남해군 발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공 모 명: 남해군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공모
- 공모주제: "저비용·고효율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감 사업"

#### ※ 사업 발굴 기준

##### (추천유형)

- 사업비 **1억 원 이하**, 예산확보 후 연내 완료 가능 사업
- 공공시설물(유희시설) 활용 방안
- 역사·문화적 자산 관광자원화 등

##### (제외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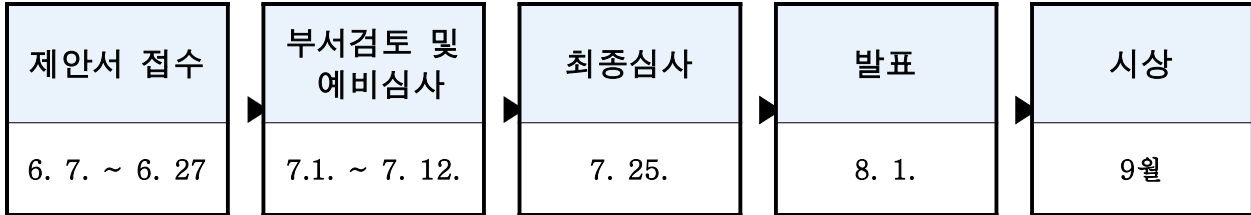
- 정책으로서의 구체성이 없는 단순의견 제시형 제안
- 예산 수반이 과도하거나 수 년 이상의 장기사업
- 단순 도로 확포장과 같은 지역 숙원사업

#### 2. 접수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https://www.namhae.go.kr/> 배너 클릭
- 국민신문고: <https://epeople.go.kr>
-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 공모전 검색·클릭
- 우편제출: (52425)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3. 진행절차



4. 심사기준

○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창의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의 독창성 정도</li> <li>• 다른 사례의 일부 참고, 전부 모방정도</li> </ul>
경제성/능률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 효과</li> <li>•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li> <li>•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정도</li> </ul>
계속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li> <li>•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li> </ul>
적용범위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넓은 정도</li> </ul>
실시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적, 정책환경적 여건에 따른 실현가능 정도</li> </ul>

○ (평가방법) 채점기준에 따라 담당부서 예비심사 후 제안심사 위원회 확정(2차) 심사

5. 발표 및 시상

○ 발표일: 2024. 8. 1.(목)

○ 방 법: 홈페이지 게시, 수상대상자 별도 유선 통지

※ 미수상자는 별도 통지 없음

○ 시상내역

- 총 액: 금 3,000,000원

- 금 상(1명): 금1,000,000원

- 은 상(2명): 금500,000원

- 장 려 상(5명): 금200,000원

○ 시상점수 최저기준: 금상(95점 이상), 은상(90점 이상), 장려상(80점 이상)

※ 각 등급별 최저기준을 달성하는 전제에서 상위 점수자에 따라 금상에서 장려상까지 순차적으로 선정. 기준에 달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의 시상은 제외함.

※ 시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예정.

**6. 유의사항**

- 제출된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남해군에 귀속됨.
- 동일·유사내용으로 중복 접수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선정되며, 동일인이 여러 건 채택될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함.
- 제안 내용의 표절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지급한 시상금은 환수 조치함.
-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고문에 정하여지지 않은 내용은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남해군 제안 규칙에 의함.

**7. 문의처:**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3)

남해군 공고 제2024 - 928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김형0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75-1번지		
	면적	2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930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신선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75-2번지		
	면적	3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932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나미0	주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
소하천명		지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75-1번지		
	면적	3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6월 7일 ~ 2029년 5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로 부지 점용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